

#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81
----------	-----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군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보급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나. 유용미생물의 공급신청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다. 유용미생물의 공급대상 및 무상공급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라. 유용미생물의 공급제한 사유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마. 유용미생물의 대금납부 및 대장비치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 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에 315백만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1.12.23. ~2022.01.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17947, 2021.12.08.)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17947, 2021.12.08.)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가족복지과-46446, 2021.12.09), 의  
견수용(기술지원과-8945, 2021.12.14)

##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생물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 또는 환경정화에 필요한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배양센터의 위치)**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배양센터 운영·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신청)**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① 유용미생물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

②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이외의 사람이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 적정성을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 및 수요자의 용도 여건을 감안하여 미생물의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용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축분 처리장 악취제거, 구제역 매몰지 등 환경정화를 위한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
- ⑤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배양센터 운영방침 및 유용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금납부)** 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에 따른다.

- ②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군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상공급시 미생물별 가격표

미생물 표기	단 위	가 격
광합성균	리터( <i>l</i> ) 당	200원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기능성균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 유용 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7일 이내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성별(남, 여)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용희망 영농규모	m <sup>2</sup> (전 답 )										
	주 재배 작목(m <sup>2</sup> )					축산(두·수)					
계	수도작	시설원예			과수	기타	젖소	한우	양돈	가금	기타

연 간	균종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벨레젠시스	기 타
예상소요량	신청량(ℓ)	(ℓ)	(ℓ)	(ℓ)	(ℓ)	(ℓ)	(ℓ)
금액	단가						
	금액						
사용희망기간	년 월 ~ 년 월						

위와 같이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서 약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미생물제 안전사용 미이행 등 서약사항 위반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상기사항을 읽은 후 신청서에 서명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① 제공받는 기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 유용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	▶ 필수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선택 기재항목 : 영농규모, 주작목, 미생물용도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b>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b> <b>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b>동의 하지않음</b> <input type="checkbox"/>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제공받는 기관	문자전송 업체
② 이용 목적	▶ 유용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	▶ 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b>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b> <b>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b>동의 하지않음</b>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유용 미생물 공급 대장

연번	날 짜	인 적 사 항			용 도	공 급 량(ℓ)							인수자 서명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계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발레젠 사스	기 타 ( )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 생략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생략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 생략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 하. < 생략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

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

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5. “보증성분”(保證成分)이란 비료업자가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비료생산업자: 비료를 생산(제조·배합·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자

나. 비료수입업자: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자

다. 비료판매업자: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제7조(비료의 공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 훼손, 성분 저하 및 포장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 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⑧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료를 내야 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5조(배양센터 운영·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연1.4% 인상),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 소요예산 항목별 적용

### 나. 추계 결과

- 세입 : 200원 × 15,000ℓ = 3,000천원(연간 500리터 이상 시)
- 세출 : 연간 세출예산 추계 아래 표 참조

내역	산출기초(2022년)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315,486	
인건비	기간제근로자(2), 공무원(1) 보수	84,486	101-04
	배양센터 운영비	10,000	201-01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6,000	201-02
	시설장비 유지비	5,000	201-02
재료비	미생물 배양 배지 및 소모성 재료	160,000	206-01
자산취득비	운영물품 구입	50,000	405-01

### 다. 재원조달 방안

- 군 자체 재원, 2022년 당초예산 편성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연락처	(033) 330 - 1304

